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44

제출연월일 : 2015. 6. .
제 출 자 : 복지경제국장

1. 개정이유

혁신도시 내 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2조)
-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노인복지관 추가

3. 근거법규

가.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6조 및 제37조
나.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
다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 예산조치 사항 : 예산담당 협의
나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라.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: 해당없음
마. 입법예고 : 2015. 4. 20 ~ 2015. 5. 11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
중구노인복지관	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2길 50(남외동)
함월노인복지관	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(유곡동)

제10조 중 “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,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td><td>제1조(목적) ---------- 운영에 ----------.</td></tr>
<tr><td>제2조(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2길 50(남외동)에 둔다.</td><td>제2조(명칭 및 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<table><tr><th>명 칭</th><th>위 치</th></tr><tr><td>중구노인복지관</td><td>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2길 50(남외동)</td></tr><tr><td>함월노인복지관</td><td>울산광역시 중구 종가3길 15(유곡동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, 「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등을 준용한다.</td><td>제10조(준용) ----------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----------.</td></tr>
<tr><td>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td><td>제11조(시행규칙) --------- 시행에 ----------.</td></tr>
</table>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 안 번 호 1144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❍ 제출연월일 : 2015. 6. 15.(월)

❍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❍ 위원회회부 : 2015. 6. 16.(화)

❍ 위원회심사 : 2015. 6. 26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❍ 혁신도시 내 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2조)

-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노인복지관 추가

4. 근거법령

❍「노인복지법」제4조, 제36조 및 제37조

❍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6조

❍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기호)

❍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혁신도시 내 노인복지관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,

❍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